

	보 도 참 고 자 료				
	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담 당 자	홍 연 제 사무관 (02-2100-2663)
	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김 명 철(02-3145-7690)		이 행정 팀 장 (02-3145-7651)

제 목 : 스탠다드자산운용(주) 및 아데나투자자문(주)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

■ 금융위원회는 '22.1.26일(수)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(주)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, 임직원 제재 조치 및 아데나투자자문(주)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, 과태료,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1. 조치배경

- 스탠다드자산운용(주)(이하 '스탠다드') 및 아데나투자자문(주)(이하 '아데나')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, 자기 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이 적발되어,
- 금융위원회는 '22.1.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각각에 대하여 금융 투자업 등록취소,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.

2. 스탠다드자산운용(주)에 대한 조치내용

① (등록취소) 스탠다드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*을 취소**하였습니다.

*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/ 스탠다드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 외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사항이 없음

**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('22.1.26.)

② (임직원 제재)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前임직원에게 대해 면직 상당,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.

3. 아데나투자자문(주)에 대한 조치내용

① (등록취소) 아데나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*을 취소**하였습니다.

* 자본시장법 제18조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/ 아데나는 투자자문업·투자일임업 외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사항이 없음

**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('22.1.26.)

② (과태료·임직원 제재)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,2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으며,

○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스탠다드, 아데나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·일임 계약고가 없어 금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음

4. 향후계획

□ 금융당국은 자산운용, 투자자문·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

○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·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자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